

『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공무원 당연직 이사 조정
- 당연직이사 중 위탁업무 비중이 낮은 건설도시국장을 위탁 비중이 높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여 공단업무 지도감독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당연직이사 조정(안 제9조제4항)
 - 행정지원국장 ⇒ 삭제함
 - 건설도시국장 ⇒ 상하수도사업소장

4. 참고사항

-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(행정자치부, 2004. 5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비상임 이사 정수의 50%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되어 있음

- 현재 비상임 이사 7명 중 4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당연직이사 1명을 감축하면서
- 업무 비중이 낮은 「행정지원국장」을 제외시키고 위탁업무 비중이 낮은 「건설도시국장」을 「상하수도사업소장」으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임